

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3월 18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상표 출원에 관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관의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고 개방특허 실시로 통상실시권 등록건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, 특허청에 상표 심사인력 5명(6급 5명)과 등록방식 심사인력 1명(7급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 호, 2016. . . 공포 및 시행)됨에 따라, 새로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,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산업재산활용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상표 출원 및 등록건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정원 증원(안 별표1, 별표2)

○ 상표 출원에 관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관의 1인당 처리건수 적정화를 위한 상표 심사인력 5명(6급) 증원

○ 개방특허 실시로 통상실시권 등록건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등록방식 심사인력 1명(7급) 증원

나.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 분장(안 제8조제4항)

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산업재산활용과에서 담당

3. 의견제출

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6년 3월 28일**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(참조: 창조행정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(<http://www.kipo.go.kr>) 「책자/통계-법령 및 조약-입법예고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보내실 곳

○ (우편번호: 35208)

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

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

전화: 042)481-5054, Fax: 042)472-3504

이메일: hyunjinyun@korea.kr